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44
------	-----

2005년 6월 23일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5년 6월 13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5년 6월 23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경영기획실장 이 철 수)

가. 개정 이유

- 시립대학교를 특성화된 도시과학 대학으로 육성하고 첨단 산업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관리기관별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중 교수 등의 정원을 현재 327명에서 337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6,142명에서 16,152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별표로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관리기관별로 규정함.
- 그 밖에 한시정원인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장 4급 정원 및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11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서울숲공원 관리,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의 추진인력으로 상계·조정하고자 하는 안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용 훈)

-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142명에서 16,152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에서 390명으로 규정된 교육공무원 정원수를 400명으로 개정한 것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공무원(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정수를 10명 늘려 도시과학대학으로서의 서울시립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6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임.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확보율은 66.1%로서 타대학(서울대 95.3%, 강원대 78.9%, 충북대 82.5%, 제주대 91.3%,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도 2004년까지 교원확보율을 80%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 도시과학분야의 특성화, 정보기술, 첨단산업 분야 등의 신설학과를 중심으로 한 전문 교수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시립대학교의 교육공무원 증원은 타당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됨.
- 차후로도 지속적인 재원 확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충분한 증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원 증원에 따른 2005년도 추가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 2006년도부터는 일반 예산에 반영키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봄.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를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하던 것에서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규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를 지방의회의 감독 대상으로 두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청 일반직 4급이 1명 줄어드는 것을 포함하여 일반직 전체 정원이 11명 늘어나고, 기능직이 11명 감축된 것은 한시정원인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장 4급 1명과 기능직 11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서울숲 공원 관리,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의 추진인력으로 일반직 5,6,7급 12명을 증원한 것임.
- 별표의 소방 공무원 정원에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별표의 “소방감”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바뀐 것은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제2호에서 “지방소방감”이 현3급에서 2급으로 승격되고 현 3급인 지방소방감은 “지방소방준감”으로 명칭 변경된 데 따른 후속조치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동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타당하나, 입법예고 기간을 11일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7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 2005년 4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있었던 10건의 입법예고 중에서 기한을 10일 정도 밖에 두지 않은 것은 이 건을 포함 3건 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두 건도 단순히 지하철 공사와 시립병원의 명칭변경이라는 사소한 건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차후부터는 규정대로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하기로 되어있는 입법예고를 단 10일 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 답변 : 행정자치부의 교육공무원 증원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2학기 개강에 맞추어 교수를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 앞으로는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도록 하겠음.
- 서울시의 현 직급별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5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능직 공무원 6, 8, 9급은 기준을 넘어섰고 10급은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6급 상당의 정원이 기준을 크게 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봄. 2007년에 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이런 책정기준 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나, 현재로서는 총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책정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구하고 있음.
-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 정원 조정은 중기기본인력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도록 되어 있음. 올해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의회에 보고되었는지, 이번 교육공무원 증원 건은 기본인력계획에 포함된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 답변 : 올해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의회에 보고되었고 그 내용 속에 이번 교육공무원 정원 건도 포함되어 있음. 의회에 제출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